# 금융결제원CMS 및 펌뱅킹 자동계좌이체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금융결제원CMS 및 펌뱅킹 자동이체서비스(이하"자동이체"라 합니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자"라 합니다)와 국민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CMS"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기관 공동 자금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펌뱅킹"이란 "은행"이 "이용기관"과 개별 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자금관리서 비스를 말합니다.
- ③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CMS 이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은행"과 개별 출금이체 대행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합니다.
-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각종 수납자금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납부자"란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출금 거래 고객을 말합니다.
- ⑥ 본 약관에서 영업일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날로 합니다.
  - 1. 법령에 의한 관공서의 (대체)공휴일
  - 2. 토요일
  - 3. 근로자의 날
- 제3조(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①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 ②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 제4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납부자가 지정에 의하되, 납부자의 지정이 없거나 납부자가 개시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제5조(자동이체)

- 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은행 앞으로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납부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당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에게 납부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본 약관과 납부자의 의사에 따라 은행은 예금청구서나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제6조(귀책사유) 납부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은행이 이용기관에 대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한 손해는 납부자에게 귀속됩니다.

제7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은행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내의 예금잔액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하며, 납부자가 이용기관의 은행에 대한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제8조(자동이체 해지)

- ① 납부자가 요청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기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이후 은행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납부자가 은행에게 특정 계좌에 대한 자동이체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납부자의 특정계좌에 동일 이용기관으로부터 은행에 대한 수건의 자동이체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자의 요청대로 건별로 처리하며, 납부자 또는 이용기관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제9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납부자 또는 이용기관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자동이체 등록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 제3조의 방법에 따라 납부자가 자동이체 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기관에게 귀속됩니다.

#### 제11조(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납부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납부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납부자는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납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합니다.
- ④ 납부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납부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3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납부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에 따라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은행은 동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계좌이동서비스)

- ① 금융결제원CMS 및 펌뱅킹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납부자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내역의 조회 및 서비스의 해지,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납부자는 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④ 납부자가 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 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는 해지 후 당행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 ⑤ 제3조에 따라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출금이체 신청서는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

부 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